

구성하여 방문자에게 편안함을 더해주며, 지식·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 구성하고, 또한 회원간 친목 도모를 위한 동호회 코너도 신설하여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최대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

- ▶ 협회에서 발간하는 「동위원소 뉴스」, 「동위원소 회보」, 「방사선이용통계」, 「수출입실무안내」, 「동위원소와의 만남」, 「알기쉬운 방사선영

향」 등의 책자를 모두 e-Book시스템을 적용하여 검색 및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으며,

- ▶ 「궁금해요 방사선」 콘텐츠 구성으로 일반인을 위한 방사선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안전관리실무 콘텐츠는 방사선안전관리실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
- ▶ 또한 협회 영문사이트를 개설하여 국제화에 맞춰 나갈 예정이다.



<www.ri.or.kr>



<www.ri.or.kr/eng>

## ● 유관기관 동정

### 과학기술부

#### 자기 피부세포를 이용한 '뿌리는 세포치료제' 상용화

- 화상, 방사선피복치료 등 재활 성형치료에 광범위하게 적용 -

과학기술부(부총리 겸 장관 오명)와 원자력의학원(원장 이수용)은 원자력실용화사업 및 국가지정연구실(NRL)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, 화상환자 및 방사선 피폭 환자 등의 피부조직 복원치료를 위한 '자기 피부세포를 이용한 뿌리는 세포치료제'를 상용화하였다.

지난 5년 동안 원자력의학원 손영숙 박사팀이 개발

한 이 세포치료제는 환자로부터 떼어낸 피부조직으로부터 표피세포를 분리·배양시켜 생성된 왕성한 분열 단계의 세포(세포수 100~200배 증가)를 상처부위에 직접 분사하여 진피와 표피 모두를 동시에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제이다.

위 치료제는 넓은 면적의 피부에 골고루 접종 할 수

있고 실리콘 보호막의 존재 하에 표피층이 재생되는 등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진보한 인공피부 자가 치료제이다.

이 치료제는 피부 재생률이 탁월하며 화상환자, 방사선피폭 환자 등 재활 성형치료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고 간편한 시술과 높은 치료효과가 기대되어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.

현재 미국에서는 살아있는 세포를 포함한 인공피부의 경우 1998년 처음 시판된 이후 1999년에 1억 5천

만 달러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. 일본도 화상과 당뇨병 케양 등으로 피부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연간 약 25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한 시장 규모가 4천억엔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. 그러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한 생 인공피부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, 이번 연구결과로 보다 효과적으로 환자들의 상처부위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.

**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
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**

○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5 - 123호

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5년 8월 3일  
과학기술부장관

**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 
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**

1. 제정이유

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, 이를 산업 활동에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제7426호)에서 위임하거나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 
시행령안

1) 비파괴검사의 방법을 방사선 비파괴검사 등 6개 방법과 기타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인

정된 검사 종목으로 정함(안 제2조)

2)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함(안 제4조 및 5조)

3)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장비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실용화를 위한 육성지원 범위를 정함(안 제6조제1항)

4) 비파괴검사 관련 전문 인력양성의 지원범위를 정함(안 제7조제1항)

5)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시기, 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함(안 제10조)

6)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함(안 제11조제1항)

7)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 인력 및 장비의 기준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정하고,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을 둠(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)

8) 검사자(책임자를 포함)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으로서 기본교육·전문교육·관리교육으로 구분하고, 일정 기준의 시설·장비 등을 갖춘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)

9) 발주자가 설치하여야 할 안전설비의 대상을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5년 이상 이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함(안 제16조제1항)

나. 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안

- 1) 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파괴검사 방법의 종목으로서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인정된 음향방출 검사, 육안 검사 등의 종목을 정함(안 제2조)
- 2)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·육성할 기관으로서 특정연구기관, 정부출연기관, 대학,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을 정함(안 제3조제1항)
- 3)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비파괴검사 종목별 인력현황, 장비 명세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함(안 제4조제1항)
- 4) 비파괴검사 업무에 대한 기술능력·경험을 갖춘 책임자로서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현장근무경험자와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현장근무경험자로 정함(안 제5조)

- 5) 검사자가 될 수 있는 자로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취득자 외에 '경제협력개발기구' 회원국가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함(안 제7조)
- 6) 검사자(책임자를 포함)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·대상 및 시간 등을 정함(안 제9조제1항)
- 7) 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(안 제11조제1항)
- 8) 비파괴검사업무의 성실한 이행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(안 제13조제1항)

### 3. 의견수렴

과학기술부는 이 「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.

## 회원사 동정

### 한국원자력연구소

#### 美알곤국립연구소(ANL)와의 기술협력약정 체결

- 제 4세대(Gen-IV) 원자력시스템 분야 등 공동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-

한국원자력연구소(소장 朴昌奎)는 2005년 8월 8일 미국 알곤국립연구소(ANL, Argonne National Laboratory, 소장 Robert Rosner)와의 원자력 기술협력약정을 체결했다.

이번 협력약정의 주요 분야는 핵주기를 포함한 제 4세대(GEN-IV) 원자력에너지시스템, 첨단 경수로 원자로시스템, 첨단 가스원자로 시스템, 원자력을 이용한 대규모 수소생산, 연구로원자로 기술 이용, 제염 및 해체 기술, 원자력과학기술 등이다.

이번 협력약정은 작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25차 한·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두 기관이 상호 기술협력약정을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.

이와 함께, 올해 7월 25일부터 3일간 미국에서 개최된 제 26차 한·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이번 기술협력약정에 대한 두 나라 정부 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.

특히, 이번 협력협정 체결은 미국 부시행정부가 원자력 이용 확대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시점에서 성사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. 따라서 두 기관은 이번 협력약정 체결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제 4세대(Gen-IV) 원전설계 시스템 등 공동연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간 실질적인 원자력연구개발 협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.

이미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알곤국립연구소는 1960